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4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5.

발 의 자 : 권칠승 · 조계원 · 박상혁
모경중 · 신정훈 · 한민수
송재봉 · 소병훈 · 박용갑
박지혜 · 위성곤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5년 10월 23일에 시행예정인 개정법률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단체 채팅방과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, 성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분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
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폭력행위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

려는 것임(안 제5조의4제2항 등).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93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
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제2항 전단 중 “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
장소의 변경, 전보 등 적절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
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
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피해자 또는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전보 조
치
 2. 성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
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
 3.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
있다.

이 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2093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<u>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법률 제20930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5조의4(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----- -----<u>.</u>----- ----- -----<u>.</u> <u>1. 피해자 또는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또는 전보 조치</u> <u>2. 성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</u> <u>3.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</u>

<u><신 설></u>	<u>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</u> <u>각 호의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</u> <u>할 수 있다.</u>
<u>③ ~ ⑤</u> (생 략)	<u>④ ~ ⑥</u> (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)